

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SRI증권투자회사(주식) 정관 변경 전·후 비교표

변경전	변경후
<p>제18조의1(신주의 판매기준)</p> <p>9. 클래스 CF : 투자자의 자격을 집합투자기구,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2 제 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,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, 100억 이상 개인, 500억 이상 일반법인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	<p>제18조의1(신주의 판매기준)</p> <p>9. 클래스 CF : 투자자의 자격을 집합투자기구,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, 100억 이상 개인, 500억 이상 일반법인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
<신 설>	<부 칙>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▣ 라자드코리아SRI증권투자회사(주식) 투자설명서 변경 전·후 비교표

항목	변경전	변경후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(2)클래스별 가입자격</p>	<p>클래스CF가입자격: 주주의 자격을 집합투자기구,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2 제 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,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, 100억이상 개인, 500억 이상 일반법인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주</p>	<p>클래스CF가입자격: 주주의 자격을 집합투자기구,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, 100억 이상 개인, 500억 이상 일반법인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주</p>